

아르헨티나 商標制度解



朴 英 緒
<辨 理 士>

1. 商標의 定義 및 不登錄事項

아르헨티나에서 商標라 함은 特殊한 態樣으로 나타낸 事物의 名稱, 사람의 姓名 또는 名稱, 記號, 모노그램, 彫刻 및 印章, 作爲의 言語, 特別한 圖案文字 혹은 數字나 이들의 結合, 物品의 容器, 包裝 및 그 밖의 表示로서 工場製品, 商去來에 관련된 것, 耕作物 및 農業製品을 이것에 의하여 識別시키고자 하는 特別顯著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드는 것은 商標, 製造標 또는 農業標로서 認定하지 않는다.

(1) 國家 또는 州가 現實의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可能性이 있는 文字, 言語, 名稱 및 그 밖의 識別表示

(2) 製造人이 自己의 生産物에 賦與하는 形態

(3) 生産物의 色彩

(4) 通常 사용되고 있는 語句 및 新規 또는 特殊한 性質을 가지지 않는 表示

(5) 生産物의 性質 및 그것이 屬하는 種類를 表示하기 위하여 通常 사용하는 表示

(6) 道德에 違背되는 그 밖의 표시

이 가운데 사람의 名稱이나 肖像등은 그 當事者 또는 四等親 以內 相續人의 承諾을 얻지 못하면 標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2. 商標權取得節次

商標, 製造標 또는 農業標를 專用하는 權利를 取得하려 하는 者는 工業所有權局에 出願을 해야 하는데 다음의 書類添附가 필요하다.

(1) 사용을 希望하는 標章의 見本 6通

(2) 표장이 數字 또는 記號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그 표장의 說明書 2통(여기에는 표장을 사용하는 商品의 數 및 그 상품이 工場製品, 耕作物 또는 農業製品인지의 區別을 表示해야 함)

(3) 出願手數料의 完納證明

(4) 當事者出願이 아닐 때의 委任狀

(5) 사람의 名稱이나 肖像의 사용시에는 그 妥當한 承諾書 등이다.

한편 標章을 商品에 表示하는 方法이 秘密에 屬하고 또한 當事者가 그 秘密維持를 希望할 경우에는 出願時에 그 趣旨를 願書에 표시하고 그 방법을 記載한 書目을 封緘하여 提出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은 訴訟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開封할 수가 있다.

3. 受理 및 公告

工業所有權局이 출원을 受理하였을 경우에는 帳簿에 그 內容 및 日時를 簡明하게 記入하고 番號도 記載하며 公業소유권국이 등록을 拒絕하는 경우의 異議 및 訴訟을 提起할 것인지의 與否에 대한 意思表示도 記載하게 된다.

이와같이 출원이 受理되면 工業所有權局으로부터 登錄事項의 認證謄本을 交付받으며 本人의 費用으로 願書의 要旨, 出願年月日, 當事者의 姓名 또는 名稱, 標章의 複製등에 관한 公告를

하게 된다.

이 公告는 아르헨티나의 首都 및 出願인이 居住하는 州 또는 地方에서 5日 동안 계속하여 行하여진다.

公告가 끝난 날부터 30日을 經過할 때까지 權利賦與에 대한 異議申請이 없고 또한 標章으로서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의 登錄이 없을 때에는 출원은 등록되고 이에 대한 標章權證明書가 交付된다.

工業所有權局이 交付하는 標章權證明書는 權利를 賦與하여야 한다는 趣旨의 認證命令書 1通과 이것에 添附되는 說明書 및 標章의 見本 各2通으로 成立되며 國家의 名義로서 政府의 承認이 있었다는 要旨가 여기에 附記된다. 이것에는 工業所有權局長 및 擔當官의 署名이 있어야 한다.

4. 異議 및 不服申請

工業所有權局의 標章權賦與 또는 拒絕에 대하여 出願人 또는 利害關係人은 異議 또는 不服申請을 할 수 있는데 이는 工業所有權局의 決定日로부터 10日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이 申請은 工業所有權局을 통하여 出願 및 異議登錄의 認證謄本을 管轄地方法院에 移送한다.

그리하여 認證謄本을 受理한 裁判官은 通常의 訴訟事件에 適用하는 節次에 따라 遲滯없이 審理하고 그 判決은 곧 바로 工業所有權局으로 關係書類와 함께 還送된다.

만약 拒絕의 判決이 났을 때는 既納된 手數料는 出願인에게 還付된다.

5. 權利存續, 移轉 및 消滅

標章을 獨占使用하는 權利存續期間은 10年이며 同一한 期間으로 無限定更新할 수가 있다.

또한 存續期間 동안 標章權은 相續인에게 當然히 移轉될 수 있고 契約 또는 遺贈에 의하여 讓渡할 수도 있는데 營業所의 移轉이나 賣却時에는 標章도 함께 移轉 또는 賣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讓渡人은 移轉 또는 賣却의 契約中에 明示의 由로 課하여지는 制限 이외의 어떠한 制限도 받지 않으며 또한 그 標章의 名稱이라 할지라도 讓受人이 採用한 方法과 同一한 方法으로 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標章을 移轉할 때는 반드시 工業所有權局에 登錄을 하지 않는 限 이를 專用할 수 있는 權利가 發生하지 않으며 公業소유권국에서 該當證明書의 交付를 받은 포장만이 商標法에서 賦與하는 財產權의 目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한편 標章權은 다음에 드는 경우에 消滅한다.

(1) 利害關係人의 請求가 있을 때

(2) 利害關係人이 更新登錄節次를 闕지 않고 10年의 存續期間을 經過시켰을 때

(3) 標章의 効力을 泯려싸고 爭訴가 있었을 경우에 그 標章이 他人에게 屬한다거나 그밖에 이 法律에 해당하는 어떤 理由로 말미암아 權利를 賦與하지 못한다는 決定이 났을 때 등이다.

6. 罰則

다음 各號에 드는 行爲를 한 者는 500페소 以下の 罰金 및 1個月 以上 1年 以下の 禁錮에 處하며 이 경우에 있어 禁錮刑을 받은 者는 金錢에 의한 損刑處分은 免除된다.

(1) 製造標, 商標 또는 農業標를 偽造한 者

(2) 偽造標를 사용한 者

(3) 欺瞞할 意思를 가지고 標章을 模造한 者

(4) 他人의 標章 또는 欺瞞할 意思를 가지고 模造한 他人의 標章을 故意로 自己의 生産物 또는 자기의 去來에 관련된 物品에 붙인 者

(5) 故意로 偽造標章을 賣却하거나 申請 혹은 賣入한 者

(6) 欺瞞할 目的으로 偽造 또는 模造한 標章을 붙인 物品을 故意로 賣却 및 그 流通의 相對方이 되는 것을 同意한 者

(7) 欺瞞의 意思를 가지고 生産物 그밖의 物品의 標章中에 性質, 品質, 數量, 重量 및 그밖의 尺度에 관하여 또는 生産物이 製造, 또는 移送 되는 國家 및 場所에 관한 表示를 붙이거나 붙이게 한 者 등이다.

標章의 偽造 또는 模造 등에 관한 民事 및 刑事의 節次는 그 犯罪의 實行 혹은 累行後 3年, 또는 標章權者가 처음으로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起算하여 1年의 기간이 滿了된 경우에는 이를 開始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